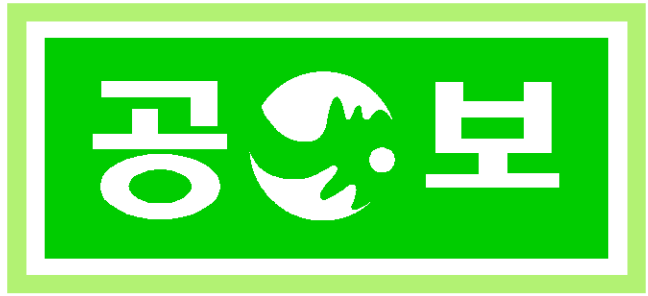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람	기 관 의 장



제 1043 호 2016. 12. 29. (목)

조 례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963호[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

규 칙

-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488호[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5
-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489호[울산광역시 북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13
-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490호[울산광역시 북구 재활용교환판매장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15
-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491호[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7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6-212호[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고시] 22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6-215호[2017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23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6-216호[201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고시] 24

안 내	○ 북구 종이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계제 의뢰 공문을 수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행정 정보→알림마당→북구 공보
--------	--

회 람								
--------	--	--	--	--	--	--	--	--


발행: 울산광역시북구 편집:기획홍보실(☎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6-217호[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26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6-218호[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사항 고시]	27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6-219호[소하천 점용 연장(변경)허가 고시]	28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6-220호[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29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6-221호[하천 점용·사용 허가 고시]	30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6-224호[「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31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6-226호[공유수면 점용 연장(변경)허가 고시]	38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6-228호[도로명주소 고시]	40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6-229호[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42

공 고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6-1294호[2017년도 울산 북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 계획]	44
---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2016년 12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963호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50개”를 “50개(인구 30만 이하인 자치구의 경우에는 30개)”로 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조례 537호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전통시장 보호 및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맞게 상점가의 정의를 해석
- 나.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등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적용
- 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맞게 조례의 유효기간 삭제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2016년 12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488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직급·직렬별 정원표(제2조 관련)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동	
합계		합계	562	425	13	39	85	
		정무직	1	1				
		일반직	560	423	13	39	85	
		별정직	1	1				
정무직		구 청 상	1	1				
일 반 직		계	560	423	13	39	85	
		3급	소계	1	1			
			부이사관	1	1			
		4급	소계	4	3		1	
			서기관	2	2			
			기술서기관	2	1		1	
		5급	소계	32	19	2	3	8
			행정	20	12	2		6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농업/ 해양수산/시설	1				1
			행정/녹지	1	1			
			행정/보건/ 간호/의료기술	1			1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시설	1		1					
의부	2				2			
시설	3	3						
농업/해양수산	1	1						

직종면	직급면	직련면	총계	분정	의회 사부과	직속 기관	동
일	6급	소계	113	95	2	7	9
		행정	58	47	2	1	8
반		행정/세무	5	5			
		행정/사회복지	2	2			
직		행정/사서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행정/녹지/시설	1	1			
		행정/녹지	1	1			
		행정/의료기술/간호	1			1	
		행정/환경	2	2			
		행정/시설	3	3			
		행정/공업	1	1			
		세부	2	2			
		전산	1	1			
		사회복지	4	3			1
		공업	2	2			
		농업	2	2			
		녹지	1	1			
		해양수산	1	1			
		보건	2	2			
		보건진료	1			1	
		환경	1	1			
		시설	11	11			
		방송통신	1	1			
		운전	2	2			
		보건/의료기술/간호	4			4	
		사무운영	2	2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부과	직속 기관	등
일 반 직	7급	소개	<u>182</u>	<u>145</u>	4	<u>14</u>	19
		행정	78	58	4	1	15
		행정/세부	<u>4</u>	<u>4</u>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사시	1	1			
		행정/농업	1				1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2	2			
		세부	9	9			
		전산	2	2			
		사회복지	9	6			3
		사서	<u>3</u>	<u>3</u>			
		공업	<u>4</u>	<u>4</u>			
		공업/환경	2	2			
		농업	3	3			
		농업/수위/해양수산	1	1			
		녹지	5	5			
		수위	1	1			
		해양수산	1	1			
		시설/해양수산	1	1			
		보건	5	4			1
		보건/약무	1				1
		보건/간호	1				1
		의료기술	3				3
		간호	5				5
		<u>보건/의료기술/간호</u>	<u>1</u>				<u>1</u>
		보건진료	1				1
		환경	<u>3</u>	<u>3</u>			
		시설	<u>26</u>	<u>26</u>			
		방송통신	3	3			
유전	3	3					
전화상단운영	<u>0</u>	<u>0</u>					
능립운영	1	1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등
일 반 직	8급	소계	<u>160</u>	<u>114</u>	4	12	<u>30</u>
		행정	<u>63</u>	<u>40</u>	1		22
		행정/세무	2	2			
		행정/사회복지	4	3			1
		행정/사시	3	3			
		행정/공업	<u>1</u>	<u>1</u>			
		행정/농업	2	1			1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4	4			
		행정/방송통신	1		1		
		세무	6	6			
		진산	4	4			
		사회복지	<u>9</u>	3			<u>6</u>
		사서	3	3			
		숙기	2		2		
		공업	4	3		1	
		농업	1	1			
		녹지	1	1			
		해양수산	<u>1</u>	<u>1</u>			
		농업/수위/해양수산	1	1			
		보건	<u>6</u>	2		<u>4</u>	
		보건/의료기술	1			1	
		의료기술	3			3	
		간호	2			2	
		환경	2	2			
		시설	18	18			
		방송통신	<u>4</u>	<u>4</u>			
		운전	8	7		1	
		방재안전	1	1			
		전기운영	1	1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동
일 반 직	9급	소계	<u>68</u>	<u>46</u>	1	<u>2</u>	<u>19</u>
		행정	28	<u>18</u>			<u>10</u>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복지	4				4
		세무	<u>3</u>	<u>3</u>			
		사회복지	14	9			5
		사서	2	2			
		공업	<u>1</u>	<u>1</u>			
		농업	1	1			
		농지	1	1			
		해양수산	<u>0</u>	<u>0</u>			
		보건	1	1			
		의료기술	1				1
		환경	1	1			
		시설	<u>6</u>	<u>6</u>			
		방송통신	2	2			
		운진	2			1	1
보건운영	<u>0</u>				<u>0</u>		
별 정 직	계		1	1			
	6급 상당	소계	1	1			
		비서	1	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가. 2016년 기준인건비 범위 내 정원 조정
 나. 국가시책 및 지역현안 사업 추진에 따른 인력수요 반영

2. 주요내용

가. 정원 변동 : 562명(553명→562명)

1) 정원 순증 : 9명

○ 국가시책 : 4명

- 사회복지과(노인복지) : 행정6급 +1
- 보건소(감염병관리) : 보건/의료기술/간호7급 +1
- 농소1동 : 사회복지8급 +1
- 강동동 : 행정9급 +1

○ 지역현안 : 5명

- 도서관과(매곡도서관) : 사서7급 +1
- 건설과(토목) : 시설(토목)9급 +1
- 건설과(치수) : 시설(토목)7급 +1, 시설(토목)8급 +1
- 안전정보과(정보통신) : 방송통신8급 +1

2) 부서 재배치 : 3명

- 총무과(재산관리) : 운전6급 +1(복지지원과 → 총무과)
- 도서관과(매곡도서관) : 행정6급 +1(도시행정과 → 도서관과)
- 건축주택과(광고물관리) : 행정/시설8급 +1(도시행정과 → 건축주택과)

3) 감원 : 3명

- 복지지원과 : 운전6급 Δ1명
- 도시행정과 : 감원 행정6급 Δ1명, 행정/시설8급 Δ1명

나. 직급 조정 : 직급 상향 6명

- 총무과
 - 행정7급 Δ1 → 행정6급 +1
 - 공업9급 Δ1 → 공업7급 +1
- 환경위생과 : 환경8급 Δ1 → 환경7급 +1
- 농수산과 : 해양수산9급 Δ1 → 해양수산 8급 +1
- 건설과 : 행정8급 Δ1 → 행정6급 +1
- 보건소 : 간호8급 Δ1 → 간호7급 +1

다. 직렬 조정

- 문화체육과(체육센터)
 - 행정9급 Δ1 ⇒ 사무운영6급 +1
 - 행정8급 Δ1 ⇒ 행정/공업8급 +1
- 안전정보과 : 사무운영6급 Δ1 ⇒ 행정8급 +1
- 교통행정과 : 사무운영6급 Δ1 ⇒ 행정7급 +1
- 건축주택과 : 행정7급 Δ1 ⇒ 사무운영6급 +1
- 운영직군 직급(직렬) 조정 ※ 관리운영직군 전직시험 결과 반영
 - 세무과 : 세무9급 Δ1 ⇒ 행정/세무7급 +1
 - 안전정보과 : 전화상담운영7급 Δ1 ⇒ 행정7급 +1
 - 보건소 : 보건운영8급 Δ1 ⇒ 보건8급 +1

울산광역시 북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2016년 12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489호

**울산광역시 북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

1. 폐지이유

- 「온산광역시 북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2016. 9. 13일 개정 시행된 내용 중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르면, 제9조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대하여 규정한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이 규칙을 폐지함.

울산광역시 북구 재활용교환판매장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2016년 12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490호

**울산광역시 북구 재활용교환판매장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재활용교환판매장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

1. 폐지이유

- 우리 구 재활용교환판매장이 2011년까지 운영되었으나, 현재 시설이 폐쇄되고 없어, '울산광역시 북구 재활용교환판매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6. 9. 30.일자로 폐지되었으므로 현행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이 규칙을 폐지함.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2016년 12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491호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음식물류”를 “음식물류”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납부편증, 납부편증 보관함의 제작사양은 조례”를 “납부편증 제작사양은”으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표 2 및 별표 4는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기존 사용 중인 필름형 납부필증은 제5조제1항의 개정시행
에도 불구하고, 2017년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별표 2]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규격(제4조 관련)

구 분	단독주택		소규모사업장			공동주택	
	3ℓ	5ℓ	20ℓ	60ℓ	120ℓ	60ℓ	120ℓ
구 조	· 불기매출구 및 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		· 용기하부에 마취 부착 및 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 · 기계식 상차가 가능한 구조				
허용오차	± 5%						
재 질	플라스틱 또는 HDPE 동등 재질이상						
색 상	생활쓰레기·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할 수 있는 색상						
외관표기 형 식	<p>배출자 주소: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p> <p>○ 주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용기의 음식물류 폐기물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 재활용이 가능한 음식물류 폐기물만 배출합니다. ▪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배출하지 않거나 이물질 혼입 배출하는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p>○ 문의처 : 북구청 환경미화과(☎ 241-7813)</p> <p style="text-align: center;"> 울 산 광 역 시 북 구</p> <p>※ 이사 가실 때에는 본 용기를 전입가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인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외관표기 규 격	직정한 크기로 조정가능						

[별표 4]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제작시양 (제5조제1항 관련)

종 류		색 상	규 격	재 질	비 고
단독주택용	3ℓ	흑갈색	가로14.7cm × 세로2.5cm	유포지	
	5ℓ	노란색			
공동주택용	60ℓ	보라색			
	120ℓ	주황색			
사업상용	20ℓ	파란색			
	60ℓ	분홍색			
	120ℓ	초록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법 관련 조문 삭제로 “수거 및 배출방법 변경” 시 잦은 규칙개정으로 인한 행정낭비와 주민혼란을 최소화하고,
- 계약 시 변경 가능한 음식물류폐기물 대행계약서 서식 삭제 및 납부필증(필름형 → 밴드형) 변경에 따라 현행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관련 조례 개정 : 2016. 9. 13.)

2. 주요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조문 삭제
 - ※ 조례 제11조에서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계약서 삭제
-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제작사양 변경(별표 4)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6-212호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제17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을 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가. 허가 번호 : 제2016-0016호
나. 허가연월일 : 2016. 12. 22.
2. 점용·사용의 목적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의 진출입로
3. 점용·사용의 장소 : 천곡동 1149-3번지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가. 면 적 : 38.0㎡
나. 기 간 : 일시 2017. 1. 1. ~ 2021. 5. 31.
5.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박 정 애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중구 옥교동길 68 (북정동)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6 -215호

2017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2017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 : 내역 “붙임 별책”

- 가.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출체계
- 나. 적용지수(구조지수의 적용, 용도지수의 적용, 위치지수의 적용)
- 다. 경과년수별 산가율
- 라. 가각산특례
- 마. 중·기축 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 바.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축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
- 사. 구분지상권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2. 2017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 내역 “붙임 별책”

- 가.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시설, 무수시설물, 임목, 어업권, 광업권, 회원권 (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승마회원권·요트회원권), 지하자원
- 나. 어업권 기준가격(북구) (단위:천원)

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양식물의 종류	단위	기준가격
종별	유형별				
복합	수하식	연승식	-	1ha	14,000
정치망	-	-	-	1ha	7,700
해조류	수하식	연승식	-	1ha	7,700

※ “2017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표”는 북구 세무과(☎ 052-241-7541)에 비치하고 열람이 가능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 2016-216 호.

201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은 201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3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12. 29.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의회 의결일자 : 2016. 12. 22.

□ 201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증감률	
총 계	328,933,512	100.00%	280,409,763	100.00%	48,523,749	17.30%
일반회계	325,097,669	98.83%	276,585,030	98.64%	48,512,639	17.54%
특별회계	3,835,843	1.17%	3,824,733	1.36%	11,110	0.29%
기타특별회계	3,835,843	1.17%	3,824,733	1.36%	11,110	0.29%
의류급여기금특별회계	284,322	0.09%	273,212	0.10%	11,110	4.07%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42,390	0.01%	42,390	0.02%	0	0.00%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1,244,313	0.38%	1,244,313	0.44%	0	0.00%
기반시설특별회계	10,483	0.00%	10,483	0.00%	0	0.00%
주차장특별회계	2,254,335	0.69%	2,254,335	0.80%	0	0.00%

□ 일반회계 세입내역

(단위 : 천원)

상관	예산액	구성비	기성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325,097,669	100.00 %	276,585,030	100.00 %	48,512,639	17.54%
100 지방세수입	64,074,000	19.71 %	55,770,000	20.16 %	8,304,000	14.89%
110 지방세	64,074,000	19.71 %	55,770,000	20.16 %	8,304,000	14.89%
200 세외수입	21,623,674	6.65 %	20,181,097	7.30 %	1,442,577	7.15%
210 경상적세외수입	17,456,542	5.37 %	15,909,609	5.75 %	1,546,933	9.72%
220 임시적세외수입	4,167,132	1.28 %	4,271,488	1.54 %	△104,356	△2.44%
300 지방교부세	11,259,263	3.46 %	5,837,263	2.11 %	5,422,000	92.89%
310 지방교부세	11,259,263	3.46 %	5,837,263	2.11 %	5,422,000	92.89%
400 조정교부금등	47,525,120	14.62 %	46,925,120	16.97 %	600,000	1.28%
410 차지구조정교부금등	47,525,120	14.62 %	46,925,120	16.97 %	600,000	1.28%
500 보조금	160,448,933	49.35 %	127,704,871	46.17 %	32,744,062	25.64%
510 국고부조금등	108,947,930	33.51 %	80,604,900	29.14 %	28,343,030	35.16%
520 시·노비보조금등	51,501,003	15.84 %	47,099,971	17.03 %	4,401,032	9.34%
700 보선수입등및내부거래	20,166,679	6.20 %	20,166,679	7.29 %	0	0.00%
710 보선수입등	19,699,622	6.06 %	19,699,622	7.12 %	0	0.00%
720 내부거래	467,057	0.14 %	467,057	0.17 %	0	0.00%

□ 일반회계 세출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구성비	기정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325,097,669	100.00 %	276,585,030	100.00 %	48,512,639	17.54 %
010 일반공공행정	14,757,361	4.54 %	16,220,562	5.86 %	△1,463,201	△9.02 %
020 공공질서및안전	3,985,942	1.20 %	1,743,838	0.63 %	2,142,104	122.04 %
050 교육	609,210	0.19 %	614,070	0.22 %	△4,860	△0.79 %
060 문화및관광	25,132,344	7.73 %	24,650,921	8.91 %	481,423	1.95 %
070 환경보존	9,741,878	3.00 %	8,914,893	3.22 %	826,985	9.28 %
080 사회복지	117,447,882	36.13 %	117,174,435	42.36 %	273,447	0.23 %
090 보건	8,575,298	2.64 %	8,222,426	2.97 %	352,872	4.29 %
100 농림해양수산	25,650,195	7.89 %	19,100,328	6.91 %	6,549,867	34.29 %
110 산업·중소기업	1,213,148	0.37 %	1,191,743	0.43 %	21,405	1.80 %
120 수송및교통	17,435,792	5.36 %	15,174,332	5.49 %	2,261,460	14.90 %
140 국도및지역개발	42,089,635	12.95 %	15,477,932	5.60 %	26,611,703	171.93 %
160 예비비	14,896,335	4.58 %	3,460,199	1.25 %	11,436,136	330.51 %
900 기타	43,682,649	13.43 %	44,639,351	16.14 %	△976,702	△2.19 %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 2016-217 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제17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3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가. 허가번호 : 제 2016-217 호
나. 허가연월일 : 2016. 12. 23.
2. 점용·사용의 목적 : 주택 진출입로
3. 점용·사용의 장소 : 어문동 1240-59(어문동44)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가. 면 적 : 7㎡
나. 기 간 : 2017. 1. 1. ~ 2021. 12. 31.(5년간)
5.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김상조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복구 아름1길 20-1(어문동)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6-218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사항 고시

「공유수면관리 및 배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고시내역

허가 년월일	허가 번호	피허가자		전용장소	면적 (㎡)	허가기간	전용목적	비 고
		주소	성 명					
2016. 12.23.	2016 -6	울산광역시 복구 신명길 109	오시환	울산광역시 복구 동해안로 1795-6	8.4	2017. 1. 1. ~ 2018.12.31.	종묘배양장 해수인수용 관료	조건부 허 가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 2016-219 호

소하천 점용 연장(변경)허가 고시

「소하천정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점용·사용 연장(변경)허가를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내 용	소하천 점용·사용 기간 연장
점용자	김수종 외 2인
전용기간	2017. 1. 1. ~ 2021. 12. 31.

신청인	주소	하천·소하천·공유수면 점용 신청현황		
		점용 위치	점용면적	점용목적
김수종	중구 광남3길 21-2(남외동)	무룡동 935-148	656㎡	경작
장경숙	중구 약사로 25, 307동 1003호(약사동, 태미안)	신천동 745-143	33㎡	경작
김양주	북구 매곡산업로 49-17(매곡동)	매곡동 795-140	1,119㎡	주차장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 2016-220 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6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가. 허가번호 : 제 2016-220 호
나. 허가 연월일 : 2016. 12. 26.
2. 점용·사용의 목적 : 토지(하천부지)의 점용(진출입보)
3. 점용·사용의 장소 : 산하동 932-1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가. 면 적 : 25㎡
나. 기 간 : 2017 .01. 01. ~ 2021. 5. 31.
5.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이희형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복구 산하중앙3로 142, 102동 2002호(산하동, 서희스타힐스)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2016-221호

하천 점용·사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하천 점용·사용 허가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허가번호 및 허가 인월일
가. 허가번호 : 제 2016-221 호
나. 허가 연월일 : 2016. 12. 26.
2. 점용·사용의 목적 : 토지(하천부지)의 점용(진출입로)
3. 점용·사용의 장소 : 산하동 932-2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가. 면 적 : 69㎡
나. 기 간 : 2017 .01. 01. ~ 2021. 12. 31.
5. 점용·허가불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이희형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중앙3로 142, 102동 2002호(산하동, 서희스타힐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 2016-224호

「울산광역시 복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울 산 광 역 시 복 구 청 장

1. 개정이유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울산광역시 복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에서 65세 이상의 순직 군경 유족들에게도 명예수당을 확대 지급하며,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들에게 명예수당을 인상 지급하여 국가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예우 및 유족들에 복지향상과 애국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원대상을 65세이상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에서 65세이상 순직군경 유족으로까지 확대(안 제3조).
- 나. 명예수당 지원사업 중 명예수당 원5만원에서 원6만원(1만원 인상), 지급방법 및 시기 등을 순직군경 유족까지 확대(안 제4조 ~ 제6조)

3. 근거법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분 대미표 : 붙임참조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01. 18.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참조 : 복지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청 복지지원과

- 전화번호 : 052-241-7606, 팩스번호 : 052-241-7609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조례개정안 전문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같은 조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순직군경 유족”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전몰군경 유족”을 “전몰군경 유족 및 순직군경 유족”으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 유족”을 “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 유족 및 순직군경 유족(이하 “참전유공자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을 “참전유공자 등”으로 하고 “월 5만원”을 “월 6만원”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참전유공자 등의 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2호서식]

유족등록번호											
<input type="checkbox"/> 선문군경 <input type="checkbox"/> 순지군경		유족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자택 :				휴대폰 :					
국가보훈 대상자	성 명					대상자와의 관계					
예금 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 번호										
<p>「울산광역시 복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몰(순지)군경 유족 명예수당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울산광역시 복구청장 귀하</p>											
※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 유족 확인원 1부 2.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2. 통장사본 1부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 [일반용지 60ㄱ/7(재할동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은)			
<신 실>	3. “순직군경 유족”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3. “명예수당”이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과 전몰군경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명예수당을 말한다.	4. ----- 전몰군경 유족 및 순직군경 유족-----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 유족으로서 명예수당 지급일 기준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부족격자는 제외한다.	제3조(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전몰군경 유족 및 순직군경 유족(이하 “참전유공자 등”이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 -----			
1.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에게 명예수당 월 5만원 지급	1. 참전유공자 등 --월 6만원-----			
2. 3. (생략)	2. 3. (현행과 같은)			
제6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명예수당을 매 분기말 다음날 25일까지 지급대상자가 지칭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제6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 매 분기말 25일 -----			
② 사망위로금은 지급받고자 하는	② -----			

법정상속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망위로급 지급 신청서를 참전유공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비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첨부생략할 수 있다.

----- 별지 제3호서식-----

③·④ (생략)

③·④ (혼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유족등록번호		-----	
선로군경 유족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자택 :	휴대폰 :
첨진유공자	성명	대한제국군경	
예금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울산광역시 복구 추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진로군경 유족 명예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1. 국가유공자 유족 확인원 1부		없음	
2.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3. 증명사본 1부			

210mm×297mm [일반용지 60g/㎡(세활용종)]

유족등록번호		-----	
<input type="checkbox"/> 진로군경 유족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처리기간 15일
<input type="checkbox"/> 순직군경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자택 :	휴대폰 :
국가보훈대상자	성명	대한제국군경	
예금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울산광역시 복구 추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진로(군경) 유족 명예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1. 국가유공자 유족 확인원 2부		없음	
2. 신청인 신분증 사본 2부			
3. 증명사본 1부			

210mm×297mm [일반용지 60g/㎡(세활용종)]

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견 서

□ 조 례 명 :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 성 명(단 체 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 례 안 내 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6-226호

공유수면 점용 연장(변경)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점사용 연장(변경)허가를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내 용	공유수면 점용·사용 기간 연장
점용자	(주)경동도시가스
점용기간	2017. 1. 1. ~ 2021. 5. 31.

점용허가 토지조서

연번	점용 위치	점용면적	점용목적	비고
1	호계동 957-3	1	도시가스공급	공유수면
2	연암동 1340-2	1.14	도시가스공급	공유수면
3	임포동 946	1.74	도시가스공급	공유수면
4	연암동 1306	1.32	도시가스공급	공유수면
5	연암동 1306	0.22	도시가스공급	공유수면
6	임포동 946	0.72	도시가스공급	공유수면
7	임포동 946	0.24	도시가스공급	공유수면
8	증산동 1166-41	0.24	도시가스공급	공유수면
9	증산동 1166-41	1.87	도시가스공급	공유수면
10	증산동 1166-41	0.05	도시가스공급	공유수면
11	증산동 1166-41	0.22	도시가스공급	공유수면
12	증산동 1200-14	0.88	도시가스공급	공유수면
13	증산동 570-1	0.77	도시가스공급	공유수면
14	호계동 957-3	4.91	도시가스공급	공유수면
15	호계동 957-3	0.18	도시가스공급	공유수면
16	호계동 957-3	0.84	도시가스공급	공유수면
17	호계동 936-19	0.36	도시가스공급	공유수면
18	매곡동 795-251	6.48	도시가스공급	공유수면
19	임포동 946	0.12	도시가스공급	공유수면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6 - 228호

도로명주소 고시

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복구 산하중앙1로 69(산하동) 외 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민원지적과 (☎052-241-7583,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복구청 홈페이지(www.o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6. 12. 29.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순번	용접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비고
1	울산광역시 북구 강동산하지구 248 2L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중앙1로 69(신하동)	2016-12-29	산하지구 중앙을 지나는 도로라는 의미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14-05-07	
2	울산광역시 북구 전곡동 534-2	울산광역시 북구 전곡길 157(전곡동)	2016-12-29	기존 자연마을인 전곡마을에 위치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08-09	
3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254-5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18길 9(호계동)	2016-12-29	기존 희망길이 추상명사이므로 도로명 사용으로 부적합하고 동 대로에불기하므로 일련번호 방식에의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9-08-20	
4	울산광역시 북구 대안동 44-17	울산광역시 북구 대안1길 228-31(대안동)	2016-12-29	예전 지명인 대안 명칭을 사용해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08-09	
5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196 1L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22길 5(진장동)	2016-12-29	옛 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이름으로 울산시미이던 누구나 친숙한 이름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12-27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6-229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우리구 건물의 멸실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복구 천곡길 157(천곡동) 외 2건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민원지적과 (☎052-241-7583,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복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6. 12. 29.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규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비고
1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길 157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534-2	2016-12-29	건축물 멸실	
2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18길 9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254-5	2016-12-29	건축물 멸실	
3	울산광역시 북구 대안1길 214-8	울산광역시 북구 대안동 44-17	2016-12-29	건축물 멸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6-1294호

2017년도 울산 북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 계획

「울산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융자규모 : 50억원(은행협조 융자)

※ 은행협조 융자 : 은행자금으로 대출하고, 울산 북구에서 이자 일부(3%) 지원

2. 자금의 용도

-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소요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 등 기업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운전자금 등

3.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에 사업장을 둔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제조업(분류번호 C)인 중소기업

※ 지원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울산광역시 북구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
- 타기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대출업체
(단, 울산 북구 경영안정자금 지원한도(2억원) 이내로 융자를 받은 기업은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
- 자금사용계획이 용도 외인 업체
- 제조업 전업율이 30%미만인 업체(재무제표 상 제조업매출액/전체매출액×100%)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 우리 구 지방세 체납업체
- 단순 사내 협력업체(독자적인 생산설비 및 작업공간이 없는 업체)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용자를 신청하거나 취소된 사례가 있는 업체

4. 용자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

5.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업체별 용자금에 대한 2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3%)
- 상환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연장불가)

6. 대출금리

- 6.92%이하(이차보전 3% 포함)
- 단, 보증서 제출은 5.92%이하(이차보전 3% 포함)

7. 용자 우선기업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여성기업확인증, 장애인증명서 구비)

- ※ 명의만 여성 또는 장애인으로 전환한 경우 지원중단

8. 대출취급은행 : 11개 금융기관

경남은행, 국민은행, NH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한국씨티은행

9. 지원결정 취소대상

- 지원결정 후 폐업, 관의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업체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용자지원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업체
- 지원 자금을 용도 외에 사용한 업체
- ※ 지원업체에 대하여는 자금사용처 수시 조사 실시

10.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17. 1. 9.(월) ~ 1. 20.(금) / 11일간, 도·일 제외
 - ※ 단, 기간 내 자금 신청 미달시 자금 소진시까지 신청접수 가능
- 신청장소 : 울산광역시 경제진흥원(1층 기업민원처리센터)
-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원본 1부
 - 자금사용계획서 원본 1부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원본 1부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사본 1부
 -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국세청 홈택스 자료
 - 사업자등록증명원, 결산재무제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을 기업에서 신청한 후 발급번호를 서식 해당란에 기입
 - ※ 해당기업 신청 후 울산경제진흥원에서 일괄 출력(신청매수 2매)
 - 사업장 확인서류(공장등록증, 임대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사본 1부
 - 자가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부동산종합증명서)
 - 임대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부동산종합증명서) + 임대계약서
 - 이차보전 우선기업 확인서류 사본 1부(해당업체에 한함.)
 - 가점(인증, 특허권, 사회공헌도,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 확인 서류 각 1부(해당업체에 한함.)
 - ※ 구비서류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경우만 인정

11. 기타사항

- 구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약 대출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심사를 거쳐야 함.
- 기업체 임직원외 업무대행 금지(융자신청 및 추천서 수령)
- 융자추천 결정 : 신청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도·일요일 제외)
 - ※ 신청기간 내 접수한 업체에 한하며, 평가항목에 의한 평점이 높은 업체 순으로 추천

- 대출취급기한 : 용자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 ※ 취급기한 내 연장 신청시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가능
- 기업의 인수·합병 등으로 인한 자금 승계 불가
- 지원받은 업체는 자금사용 후 사후관리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및 규칙에 의함.

12. 문의 및 상담

- 울산경제진흥원(<http://www.ucpa.or.kr>) : ☎ 283-7135, FAX 700-7139

울산광역시 북구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융자신청서

접수번호	기업지원팀-	접수일	
------	--------	-----	--

신청업체 현황

회 시 명		시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input type="checkbox"/> 성 <input type="checkbox"/> 님 <input type="checkbox"/> 영		(1)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주 사 업 소 (2)도로명주소	팩 스 번 호	
	(부 점) 전화번호		
사 업 장 (3)도로명주소	(공 점) 전화번호	팩 스 번 호	
(4)업대/종복	<input type="checkbox"/> 등록 <input type="checkbox"/> 미등록	(5)종업원수 (상시근로사) 명	
(6)공장등록여부		공장소유 <input type="checkbox"/> 자기 <input type="checkbox"/> 인차	
공장규모 (7)세제시설면적	㎡	(8)입차면적	㎡
담당자 성명		(9)입차기간	~
직책		부서명(연락처)	
		타기관 자금수혜여부	☐ (년도)

대출가능여부 확인 ※ 대출희망은행을 방문하여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 받은후, 신청서 접수 바랍니다.

상대기관명	대출예정금액	상대기관 담당자 확인
은행 지점	백만원	직 위: 성명: (인)
보증기관명:	()신용, ()담보, ()보증서	연락처:

※ 상대기관 담당자는 대략적인 대출 가능여부를 작성하시면 되며 이에 대한 이행책임은 없습니다.
 ※ 단, 보증시 대출 예정지 필히 보증시 발급 후 후천접수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목록 ※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본에 한함.

제 목	제출서류	량 대 부 수	설 명
	자금사용계획서	원본 1	소경양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최근3개월)	사본 1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인승, 수승, 유예, 지적새신권, 사회공헌도 확인서류	사본 가 1	" 해당업체에 한해 세출 "
	기인경도 수질 동의서	원본 1	"대표자 및 담당자 한하여 인정"

필수기세사항

국세청 홈택스 자료 발급번호(※발급방법에 요망)
 - 발급방법[주민등록번호활용, 사업자등록번호 활용(부사, 지점)]

○ 사업자등록증명원 ---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계정준경원 ---

○ 20 년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

*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 2부 신청한 후 발급번호를 작성하시면 울산경제진흥원이 직접 발급(온라인 신청으로 첨부하지 마시고 반드시 번호만 기입)
 * 홈택스 발급서류를 직접 울산경제진흥원에 제출하는 경우 발급번호 기재 실락 가능

붙임과 같이 울산북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인 (인)

울산경제진흥원장 귀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사용계획서

업 체 명		대 표 자	
신청금액	일금	원정(₩)
자 금 사 용 처			
<p>※ 실제 계좌입금 후 계좌이체(또는 인출)되어 소요되는 항목을 작성 (예) 인건비 - 1,200 만원, 원자재구매 - 5,000 만원</p>			
《유 의 사 항》			
<p>1. 자금대출 후 자금사용처 확인, 기업체 방문 등 사후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 후 6개월 이내 대출금 사용내역 통보(경제진흥원 FAX: 700-7139) ○ 대출금 입금통장사본, 계좌이체 내역, 기타관련 증빙서류 첨부 ○ 울산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관련법규에 저촉될 경우 이차보전금 회수 또는 중단 될 수 있습니다. 			
<p>2. 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 휴·폐업일 이전까지 이차보전금 지급</p>			
<p>3. 자금대출 후 사업장 소재지변경, 대표자변경, 상호변경, 휴·폐업 등 변동사항이 있을 시 반드시 신고</p>			
<p>※ 공장 신·증·개축비, 부동산(공장, 부지)매입비, 기계장치구입비 등의 시설투자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p> <p>※ 기존 대출의 상환(또는 대환) 금지</p>			
<p>위 내용을 확인 하였으며, 위반사항 발생 시 지원중단 및 기 지원금 환수전차에 동의 합니다. (자필 작성)</p>			
신청인		인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_____은(는) 울산경제진흥원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업체현황 :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번호, 법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 주소, 담당자 성명, 담당자 부서명·직책·휴대전화
- 대출가능 여부확인 : 상납기관 담당자, 상납기관 담당자 연락처
- 우대기업 확인 : 여성기업 유무, 전입전후사항, 장애인 등록증 등

2. 사용목적

-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접수 및 심사
-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추천 및 추천서 발급
-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
-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사후관리
-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변경사항신청 관리

3. 동의서 유효기간

이 동의서는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업무처리기간 동안 유효하며 개인정보처리 거부권 행사시 효력도 소멸됩니다.

4. 확인사항

개인정보 수집 동의 관련하여 울산경제진흥원으로 부터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며 인지하였습니다.

신청인 본인성명	2017년 월 일 (날인 또는 서명)
----------	-------------------------------